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5년 02월 04일

나. 발 의 자 : 윤영철, 권기만, 김복자, 안장환, 안주찬
양진오, 정근수, 정하영, 한성희(9명)

다. 회부일자 : 2015년 02월 0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02월 12일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윤영철 의원

나. 제안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정질문의 의의(안 제72조의2제1항)
- 시정질문 방식 및 발언시간을 규정함(안 제72조의2제2항)
 - 1문 1답식(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음)
 - 질문시간 : 30분(답변포함)
- 질문요지서 및 서면답변서 규정 조항 변경(안 제72조의2제3항)
 - 조의 변경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승 해

□ 검토결과

○ 본 개정 규칙안은

-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상적인 검토형 답변의 해소와 시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 시정질문의 의의를 규정(안 제72조의2제1항)하고,
- 시정질문 방식을 본 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72조의2제2항).

○ 검토결과

-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청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회의규칙이 개정 될 경우 본회의장 단상 발언대 교체와 보조 발언대 설치 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